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가칭) 출범식

- 일시 : 2015년 4월 3일(금) 17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4층 강당

협동조합 7원칙

- 제1원칙 : 조합원의 참여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 제2원칙 :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조합원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 제3원칙 : 경제적으로 공동 소유하고 공동 이용한다.

조합원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 제4원칙 :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협동조합이 정부나 시장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협동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제도에 의존할 경우 오히려 구성원의 자발적 선의는 줄어드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 제5원칙 : 교육과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6원칙 : 협동조합은 서로 협동한다.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이는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외부성을 증가시킨다.

- 제7원칙 :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는 간접 상호성과 네트워크 상호성을 촉진시키며, 사회경제 생태계를 형성 하고 발전시킨다. 사회경제 생태계가 발전할수록 협동조합의 사회적 위치는 커지게 된다.

목차

1.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1) 발기취지문	5
2) 소개	5
3) 로드맵	7

2. 사업추진계획

1) 협동조합 설립계획	9
2) 협동조합 운영계획	9
3) 태양광발전시설 추진계획	12
4) 신재생에너지 정책개선 사업	12
5) 조합원 교육, 홍보 사업	12
6) 홍보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3

3. 정관

※참고자료

1.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지원책 현황	
2. 지역별 에너지 기본조례 검토	34
3. 협동조합의 이해	
4. 햇빛발전협동조합이란?	

1

광주햇빛발전

협동조합

1.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1) 발기취지문

모든 시민은 에너지소비자입니다. 이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와 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려온 결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에너지 위기 문제에 봉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에너지 생산과 더불어 저탄소사회를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광주는 태양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에 최적의 도시입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평야가 넓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손 꼽히는 에너지자립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이 되고자 합니다. 대안에너지의 생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은 자치와 자립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됨으로서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지켜나가는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실천운동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깨어있는 시민들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햇빛발전시설은 우선 광주지역 공공기관, 학교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태양광발전 등 다양한 대안에너지 발전의 터를 개발하려고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생산을 해 갈 뿐 아니라 환경교육과 홍보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시민,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과 생태적인 가치와 실천하는 삶을 가꾸어가고자 합니다.

2) 소개

□ 목적

- 핵발전 화력발전에서 벗어난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
-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지역 풀뿌리 참여 유도
- 태양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대안사회와 협동경제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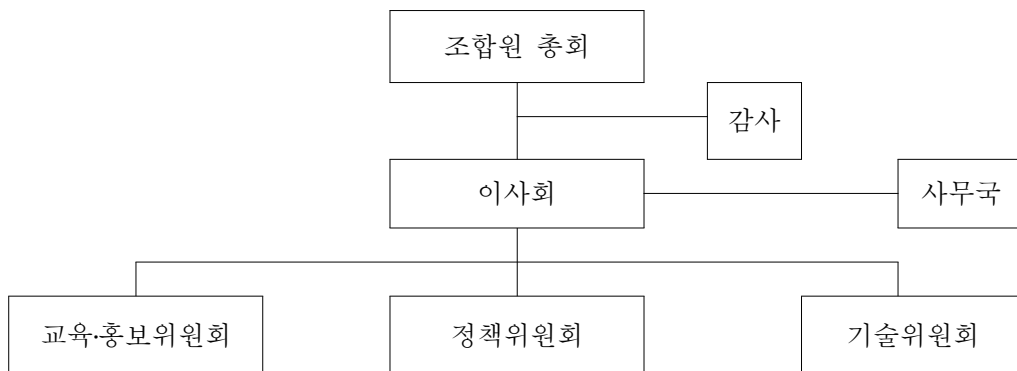
□ 비전

- 300kW 규모의 햇빛발전소 설치, 연간 100가구의 전력량을 태양광으로 공급
- 시민발전소 확산, 재생에너지 교육의 장 형성

□ 경과보고

일시	주제	논의내용
2014.10.24	제1차 준비회의	-협동조합 형식을 논의, 발기인 100명 확보 -역할분담 : 김광훈-협동조합 로드맵 : 박지연-타지역 협동조합 사례 수집
2014.11.17	제2차 준비회의	-규모와 장소 논의 - 워크숍 진행: 1)서동휘-태양광 인허가, 수익분석, 관련 기술 이해하기 2)윤봉관-협동조합의 절차와 철학
2014.12.01	제3차 준비회의	-소위원회 구성 : 정관, 발기취지문, 재원확보안 부분을 위임함
2014.12.08	제1차 분야별 준비소위	-협동조합 설립 과정 -조직과 재정 -수익성 문제 논의
2014.12.15	제2차 분야별 준비소위	-태양광발전 수익분석 -발기취지문 및 정관 가안 검토
2014.12.22	제3차 분야별 준비소위	-태양광발전 수익분석 -발기취지문 및 정관 가안 검토
2014.12.29	제4차 분야별 준비회의	-준비위원 워크숍 논의, 준비위원 확대안 논의
2014.01.15	제4차 분야별 준비소위	-워크숍 프로그램 논의, 참여인원 확대안 논의
2015.01.21	워크숍/제5차 준비회의	-‘광주.전남 햇빛발전 협동조합 추진가능성’을 주제로 함
2015.02.04	제1차 준비소위	-소위원회 역할 분담
2015.02.13	제2차 준비소의	-현장투어 기획, 향후 일정 논의
2015.03.02	햇빛발전소 현장투어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한 살림, 서울특별시청 견학 -햇빛발전 운영과정, 수익배당 관련 관계자 간담회 -서울특별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관계자 간담회
2015.03.10	제6차 준비회의	-정관 및 사업계획안 검토
2015.03.16	제3차 준비소위	-발기인 대회 준비 논의

□ 조직표



3) 로드맵

구분	협동조합	태양광 설비 허가	제도개선(시.의회)	실무지원	
담당	이희한, 윤봉란, 지준명	임동성, 서동휘, 양홍석, 송형일	김광훈, 이경희, 임낙평	광주환경연합	
3	3.3~3.9	·1호기 사업대상 부지 조사	·제도개선안 초안마련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면담 (3.23)	·추진 후원금 수납(~3.13)	발 기 인 대 회 이 전
	3.10~3.24			·현장투어(서울 3.3)	
	3.10~3.24			·추진위원회 전체회의(3.10)	
	·정관(규정)(안) 작성 ·사업추진종합계획안 작성			·발기인(설립동의자)구성 ·홍보물배포	
	·설립동의자 가입서 제작			·발기인대회 실무준비위원회회의	
4	4.3	·사업대상부지 현장실사 타당성분석 ·1호기 햇빛발전소 부지확정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4.17) ·조례개정(광주시의회 회기 4. 14~)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준) 사무실 개소(4.13)	발 기 인 대 회 이 후
	4.5~				
5	·손바닥 햇빛 클럽결성		·신재생에너지 조례 개정 및 예산 반영		
6	6.1		·교육청 MOU체결 ·광주시 MOU체결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판식 (6.8) ·협동조합 실무자 채용	
	6.12				
7	7.3	·햇빛발전 조합원 강연회 ·조합원 모집(80%완료)	·햇빛발전소 허가신청 ·햇빛발전소 시공업체신청		창 립 총 회 이후
8		·조합원모집(100%완료)			
	8.20	·햇빛발전 1호기 준공기념이벤트	·햇빛발전소 준공		
9	9.5	·햇빛짱짱, 의기짱짱(현장투어)	·햇빛발전소 발전개시	·2016년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및 예산수립	
10	10.01	·발전회사 협약체결(REC구매협약) ·햇빛배움터(조합원교육)	·공급인증서 발급		
		·꼬꼬마 햇빛배움터(어린이교육)			
12	·햇빛발전확대를 위한 심포지움				

※ 2호기(2016년 상반기), 3호기(2016년 하반기)는 1호기 준공 완료 후 세부계획 수립 예정

2

사업추진계획

2. 사업추진계획

1) 협동조합 설립계획

□ 출범식

- 일시/장소 : 4월 3일(금) 오후5시 / 광주환경운동연합 4층 강당
- 대상 : 설립동의자 30명
- 내용 : 광주햇빛발전 협동조합 사업계획안 보고, 출자약정 및 설립동의서 작성

□ 찾아가는 햇빛조합원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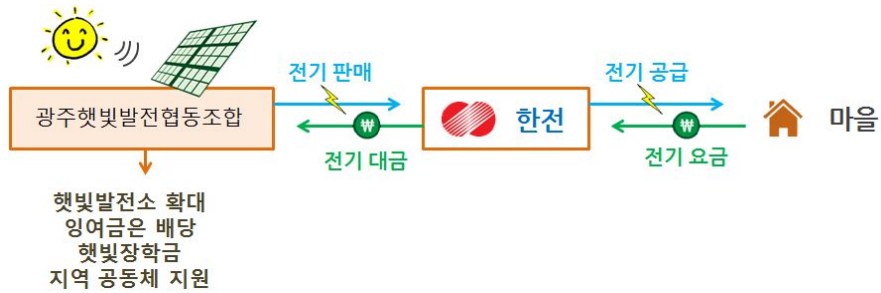
- 기간 : 4.3~ (총10회 이상)
- 대상 :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시민 10인 이상 모인 곳
- 내용 :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해 및 조합원 가입 안내

□ 창립총회

- 일시/장소 : 6월 1일(월) 오후4시 / 광주NGO시민재단 공동체홀
- 목표 : 설립동의자 100 명(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의결사항 :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2) 협동조합 운영계획

□ 운영원리



□ 조합원 구성

○ 조합원 : 250명 목표

(만원)

설비용량	목표금액	조합원명수 (목표명수)	산출 근거
70kW	1억5천	160명 (150명)	$1,000 \times 10\text{명} = 10,000$ $100 \times 30\text{명} = 3,000$ $50 \times 20\text{명} = 1,000$ $10 \times 100\text{명} = 1,000$
100kW	2억원	240명 (250명)	$1,000 \times 10\text{명} = 10,000$ $100 \times 50\text{명} = 5,000$ $50 \times 80\text{명} = 4,000$ $10 \times 100\text{명} = 1,000$
200kW	4억원	480명 (500명)	$1,000 \times 20\text{명} = 20,000$ $100 \times 100\text{명} = 10,000$ $50 \times 160\text{명} = 8,000$ $10 \times 200\text{명} = 2,000$
300kW	6억원	720명 (700명)	$1,000 \times 30\text{명} = 30,000$ $100 \times 150\text{명} = 15,000$ $50 \times 240\text{명} = 12,000$ $10 \times 300\text{명} = 3,000$

○ 모집 : 광주시민과 사업 진행하는 해당 동(단체)에서 조합원 모집, 회원조직이 있는 단체 중심으로 일부 모집, 설명회를 통한 모집

○ 구성 : 발전소 부지 구성원, 지역 주민 기타 타 지역 가입자

○ 의결권 :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1인 1표

□ 사업비

○ 100kw 기준 : 2억원(300kw 기준 6억)

○ 사무실 및 인건비 지출 가능 최소 발전 용량 : 300kw

□ 조합원 출자금

○ 출자금 : 5구좌 이상 출자 (1구좌 = 1만원)

○ 고액 출자제한 : 6,000구좌(6천만원) 이하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 출자구좌 중 30% 이내로 제한)

□ 출자금 및 배당

○ 규정(또는 규약) 제정 : 창립총회시 조합원 의결

○ 배당

- 배당금액 :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

○ 출자금 반환

- 반환 기준 : 자산과 부채에 따라 반환함

- 지급 기한 : 정기총회후 반환

□ 발전소 매출분석 :

구 분		1차년도	비 고
연간전력생산량		127,750kWh	일평균생산시간 3.5h, 발전효율 100%
판매	전기판매(한전)	19,162,500원	SMP≒150원/kWh, 가중치 1.5
	공급인증서판매	17,246,250원	REC≒90원
	총액	36,408,750원	

□ 협동조합 지출분석 :

구 분	1차년도
관리비(업무추진비)	6,000,000원
교육홍보비	2,000,000원
안전관리	840,000원
임대료	2,000,000원
보험료	1,000,000원
감가상각(정액12년)	1,666,666원
총액	28,506,666원

□ 수익분석 :

구분	감가상각비 (출자금 적립금)	누적 수입 (5년 기준)	감가상각비+ 누적 수입 (5년 기준)
100kw	년 16,666,666원 적립	9,338,061원	92,671,391원 (사업비대비 46% 적립)
비고	사업비 정액법 12년 임대기간 기준	잉여금 10% 법정적립금 포함	세후 기준(법인세 등 세금 11% 지출)

* REC계약(12년) 종료 후 공공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함

* 조합 설립 3년차부터 5%배당을 계산함 (1,2년차 배당 없음)

3)태양광발전시설 추진계획

□ 시공 및 설비

- 발전총량 : 100kW(1호기 기준임, 최종 총량의 목표를 300kW로 함)
- 발전수익 : SMP¹⁾(한전계약) + REC²⁾(입찰, 계약)
- 가중치 : 1.5(건물 위, 3000kW이하 기준)

□ 입지 선정

- 광주광역시, 광주시 교육청 부지임대 MOU체결
- 임대료 : 200만원 / 100kW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촉진지원조례)
- 운영기간 : 20년 (공유재산은 20년 임대 조건임)

4)신재생에너지 정책개선 사업

□ 부지 임대계약 관련 중간지원 조정기능 강화

- 공공기관 대상 태양광 발전 부지 모집, 협동조합 모집 및 부지 제공

□ 태양광 발전 설치비 저리 융자지원

- 100kW당 1.5억원 융자, 금리 1.5%,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상환)

□ 광주형 FIT(발전차액지원) 제도 개설

- 100kW이하 소형 발전소 100원/1kW 지원 방안 마련
- ※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지원책 현황_참조

5)조합원 교육, 홍보 사업

□ 손바닥 햇빛 클럽 형성

- 기간 : 5월 중
- 사업개요 :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_공동주택 발코니형 빗고을 발전소
 - 시범보급(2015년) : 80세대
 - 사업대상 : 공동주택으로 우수한 일조권 보유세대
 - 지원내용 : 250~300W 설치 세대 당 35만원 지원
 - 전기료절감액 : 월5~10천원(250W 설치 시)
- 내용 : 신재생에너지 학습 및 체험, 태양광발전 정보교환 및 후기 나눔

□ 햇빛발전 조합원 강연회

- 일시/장소 : 7월 15일(수) 오후7시, 광주NGO시민재단
- 강사/주제 : 이유진(녹색당 대표)/도시에서 에너지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1)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가격 매년 3% 상승, 2013년 평균 SMP : 150.7원/kW

2)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12년 계약, 입찰가 고정판매(발전량×입찰가×가중치), 90원 대 평균단가 예측

□ 햇빛짱짱, 의기짱짱

- 일자 : 9월 5일(토)
- 장소 : 부안 시민발전소(부안 등용마을)
- 내용 : 시민햇빛발전소 현장 답사, 햇빛발전 협동조합 운영원리 학습
- 일정표 :

시 간	구 분	비 고
09:30~11:00	집결/ 부안 도착	
11:00~12:30	부안시민발전소 소장 간담회	이현민 소장
12:30~14:00	점심식사	
14:00~15:30	현장 투어	
15:30~17:00	광주 도착	

□ 햇빛배움터

- 기간 : 10월중
- 프로그램 :

회차	날 짜	내 용	비 고
1	10월 5일(월)	착한에너지? 나쁜에너지?	김광훈(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2	10월 12일(월)	함께만드는 희망,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윤봉란(광주NGO시민재단)
3	10월 19일(월)	우리마을, 에너지공동체	김소영(성대골어린이도서관 관장)
4	10월 26일(월)	에너지 효율화로 그린하우스 만들기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꼬꼬마 햇빛배움터

- 기간 : 11월중
- 대상 : 어린이 조합원 등 햇빛발전에 관심 있는 어린이
- 내용 : 햇빛발전소 현장을 견학하고 재생에너지로 체험 및 놀이를 통해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이해함

6)홍보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홍보사업

- 월1회 뉴스레터 제작 발송
- 협동조합 홈페이지(페이스북)운영

□ 지역사회사업

- 매전수익 일부를 조합원 결의를 통해 지역사회 환원
- 기금을 적립하여 학교, 지역에너지단체, 복지단체 등 지원

3

정 관

3. 정관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가칭)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가칭)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한다.

제2조(목적) ①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조합은 화석연료고갈과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생산으로 위험 한 핵 발전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서 발간되는 잡지나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이 정하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

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 11조 제 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90일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 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 14조 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 15조 제1항의 1호,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 16조를 준용한다.

제3장 출자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납입 할 수 있다.

④ 제 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 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 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1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임원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3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제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 한다.

제27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 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1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2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 33조 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4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

으로 정한다.

제36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약,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 5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이사회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0조(이사회회의 의사록)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1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의 감사를 둔다 .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상근이사)을 둘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선임) 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 1항 , 제 2항의 선거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및 총회와 이사회 의 의결을 준수 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회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6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7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9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3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햇빛발전소건립 및 전력판매사업
2. 시민출자로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재생에너지발전소의 건립사업
3. 에너지 , 환경 , 협동조합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4.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6.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7.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8.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한 사업

제54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3.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56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7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광주광역시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정관, 규약
2. 결산서
3.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4. 총회 등 조합원 활동

제59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5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에 위하

여 지출할 수 있다.

제61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 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2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 61조 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 59조 및 제60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 배당의 방법 ,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④ 조합은 제 61조 에 따른 보전과 제59조 및 제 60조에 따른 적립금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3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 63조 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6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7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9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광주광역시시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가칭) 규약(안)

대의원 선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별 (또는 구성원단위별 등)을 참고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해당 지역단위 (또는 구성원단위 등)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자
2. 조합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6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선거관리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2조에서 정한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효·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는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는 현 임원중에서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임원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는 후보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⑤ 등록시에는 임원후보 등록신청서, 추천서,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 ① 임원후보자의 자격은 주요 활동에 1년 이상 참여한 조합원으로 한다.

② 제9조 1항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가입한지 1년 이상 된자로 한다.

제11조(전형위원회)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3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⑤ 전형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임원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미달된 수만큼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전형위원회 추천후보자의 등록)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는 전형위원회의 추천서, 후보자의 승낙서 및 확인서를 선거일로부터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5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6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한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 제1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9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0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1항에 의해 추천된 이사장 후보의 승인은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1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22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이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감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3조(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4조(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5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 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6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7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제28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9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총회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

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날인인이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 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약은 이 조합이 대의원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잉여금 배당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2조에 의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준일)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로 한다.

제4조(배당금지급)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기타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지원책 현황

구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투자촉진(발전차액)지원	100kW이하 5년간 100원(kW당) 지원	50kW이하 3년간 50원(kW당) 지원		
임대료	1mW당 년 2,000만원	10/1000	10/1000	10/1000
금융지원	100kW이하 1.5억원 용자 금리 : 1.75%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상환)		100kW이하 1.0억원 용자 금리 1.8%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상환)	
REC안정적 계약	SK 등 발전사와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협동조합 지원	조합당 100kW 이하, 설치장소 2개소 제공			
기타	서울시 햇빛지도 사이트 개설: 서울 전역 건물별 발전량 직접 확인			

2.지역별 에너지 기본조례 검토

<p>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시행 2013.5.16. 개정 제5489호, 2013.5.16. 서울특별시(녹색에너지과)2133-3565</p>	<p>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2009-10-30 조례 제3957호 개정2013-12-02 조례 제4651호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p>	<p>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제정2004-10-04 조례 제3779호 개정2014-12-15 조례 제541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에너지정책과)440-4294</p>	<p>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제정2013-08-01 조례 제4279호</p>
<p>제5장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중전 제4장에서 변경 2012.7.30.)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③ 시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2.7.30.) 제6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중전 제5장에서 변경 2012.7.30.)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p>	<p>제8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이용의 의무화 등)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적률,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신·재생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1.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연구개발비 및 운전자금 융자 ② 신·재생에너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행정·재정지원 등 <개정 2013.2.25.>)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p>	<p>제22조 (세제 및 재정지원 등) 시는 에너지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세제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4. <u>시민 및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절약 사업에 적극적 참여 의지를 약속하는 에너지절약 협약을 시장과 체결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u> 제22조의2(공유재산 임대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11-06]</p>	<p>제10조(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11조(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② 시장은 시 또는 소속 지방공기업 등의 공공건축물의 옥상, 공유지 등에 대해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이상으로</p>

<p>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신설 2012.7.30., 개정 2013.5.16.)</p>	<p>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p> <p>1.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전문기업 등에게 공유자산을 수익계약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2.25.]</p> <p>3. 재정 등을 지원 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13.2.25.]</p> <p>② 도지사는 시·군의 신·재생에너지 시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3.12.2.></p> <p>③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2조(재산매각 등)</p> <p>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수익계약에 의하여 도유재산 또는 공유자산을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p> <p>제5장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 설립</p>		<p>한다.</p> <p>제12조(신·재생에너지 기금)</p> <p>시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 자원 마련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p>
--	---	--	--

	<p>제17조(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 설립 등)</p> <p>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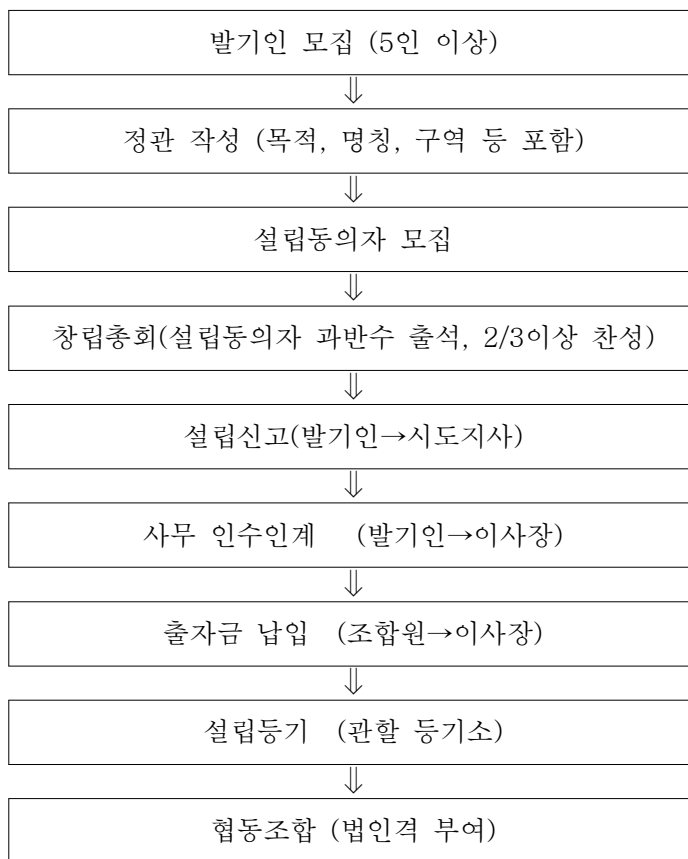
3. 협동조합의 이해

1)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징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ICA)입니다.

공통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금융 및 보험은 제외됩니다. 의결권은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로 운영됩니다.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된 유한책임을 지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배당은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에 따라 주어집니다.

2) 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4.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해

1) 에너지협동조합의 의의

에너지협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판매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풍력, 태양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연료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 판매하며,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에너지협동조합의 유형은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에너지협동조합 형태와 기존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활동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형태로 나뉩니다.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와 시민참여에 의한 기후변화대응 실천을 위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태양광을 이용한 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도입 및 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악화되었는데, 협동조합법 시행 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단열, 적정기술 교육 및 훈련 등과 같은 에너지 분야 협동조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구조물이 지속되어야 하는 특성 상 대부분 장소 확보가 용이한 청사, 학교 등 공공건물이나 부지를 우선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광주형에너지협동조합 육성방향-정책브리프/(재)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 참조)

2) 국내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현황



설립동의자 가입안내



조합원이 되시면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누구나 1인1표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햇빛조합원 교육, 강연회 등 다양한 조합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홈페이지 가입 광주환경운동연합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전자우편 kwangju@kfem.or.kr
페이스북 facebook.com/gjsuncoop

5구좌 이상 출자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1구좌 = 1만원, 분납가능)

입금계좌
광주은행 063-107-692930
(예금주 : 이희한)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가칭) 준비위원회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신협 3층)

TEL ■ 062-514-2470(광주환경운동연합) FAX ■ 062-525-4294

홈페이지 ■ www.gjekfem.or.kr (광주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 www.facebook.com/gjsuncoop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함께하는 단체 ■

 **icoop**생협 광주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Gwangju Eco Bike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NGO시민재단**